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29호서식] <개정 2022. 11. 29.>

[] 소각시설
[] 멸균분쇄시설
[] 소각열회수시설
[] 열분해시설
[]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
[] 시멘트 소성로

[] 설치
[] 정기

검사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20일

설치자	① 상호	② 업종
	③ 대표자 성명	④ 사업자등록번호
	⑤ 사무실 주소 (전화번호:)	

⑥ 검사를 받으려는 날	. . .

⑦ 시설제원

설치장소			
처리용량	kg/시간	가동시간	시간/일
형식		가동방식	
시설모델번호		제조업소	
처리대상 폐기물 조성(%)			
처리공정			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30조제1항·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7항에 따라 ([] 소각시설, [] 멸균분쇄시설, [] 소각열회수시설, [] 열분해시설, []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, [] 시멘트 소성로)에 대한 ([] 설치, [] 정기) 검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○○○ 검사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1. 소각시설, 멸균분쇄시설, 소각열회수시설이나 열분해시설의 경우 가. 설계도면 나. 폐기물조성비 내용 다.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2.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가. 설계도면 나.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(물질수지도를 포함합니다) 다. 재활용제품의 사용 또는 공급계획서(재활용의 경우만 제출합니다) 3.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가. 설계도면 나. 폐기물 성질·상태, 양, 조성비 내용 다.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	수수료 없음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검사	→	결재	→	검사결과서 발급
신청인				검사기관				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